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0. 19(월)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10. 1

나. 제안자 : 김성숙 · 이명숙 · 박승희 의원 외 4인

다. 회부일자 : 2009. 10. 1

라. 상정일자 : 2009. 10. 16(제177회 임시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김성숙 의원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문화콘텐츠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세계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함에 따라
- 시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

-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제작자, 창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시장은 국내·외 기업유치,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시장은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2조)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둠(안 제13조)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0조)
- 시장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2조)
-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21세기 국가의 주요 전략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인천의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성숙·이명숙·박승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제작자·창업자·연구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을 시행하는 자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우리시는 2008년 12월 3일 남구 도화동·주안동 일원 약 8만평이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지역 문화콘텐츠 기술력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천문화콘텐츠 협력지원사업과, 여가문화의 저변확대와 유망주 육성을 통해 e-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 e-스포츠게임대회 개최 등 총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

- 지정일 : 2008. 12. 3
- 위치 : 인천시 남구 도화동 592-5번지 일대(도화동, 주안동 일원)
- 면적 : 263,164㎡(약 8만평)
- 중점육성기간 : 2008 ~ 2013년(5년)
- 중점육성분야 :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산업
- 사업내용
 - 창업보육사업, 콘텐츠 상품화 및 연구개발(R&D)
 - 사업, 기업·기업·대학·연구소 지원기관 유치 및 집적화
 -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 산·학·연 협력사업 등
- 시행자 : 인천광역시,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참고자료>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비교 --- 「붙임」

□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및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안 제12조 ~ 안 제19조)

- 안 제12조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관리하기 위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시책의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문화콘텐츠육성기금의 설치(안 제22조)

○ 안 제22조에서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²⁾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³⁾ 및 「동법 시행령」⁴⁾에서는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2006. 4. 28일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유효기간을 2006. 12. 31일까지로 정하여 사실상 동 기금을 폐지함

2)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조례안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규정과 기금의 채원과 용도 등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미비되어 있어,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동 조를 삭제한 후 별도의 관련 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조⁵⁾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조례에 대해서만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조례를 개정하는 후속절차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3조)

- 안 제23조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⁶⁾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맡기는 것을 위임으로,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조 (기금설치의 제한)

시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위탁 관련 규정은 “권한의 위탁”, “업무의 위탁”, “사무의 위탁”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개별 행정법령상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민간위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되는 것이 보통임.
- 본 조례안 제23조의 내용은 위임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은 없어 조의 제목을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제1항을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별표]

기금 설치 조례

1.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4.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5.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7.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8.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9.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0.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11.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
1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13.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4.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콘텐츠사업 및 문화콘텐츠 상품 관련 제작자와 창업자, 연구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시 차원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됨.

「붙임」

문화산업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 비교

구 분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개 념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	문화산업 관련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법적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
혜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부담금 면제(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5종) ▣ 각종 인·허가 혜택(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하천·도로공사 시행 및 점용 등 34종) ▣ 세제혜택(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면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부담금 면제(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4종) ▣ 각종 인·허가 혜택(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하천·도로공사 시행 및 점용 등 9종)
지정현황	<p style="text-align: center;">총 2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2002.3), 춘천(2008.1) 	<p style="text-align: center;">총 9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대구, 대전, 부천, 전주, 천안, 제주(2008.2) ▣ 인천, 고양(2008.12)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김용근, 이명숙, 박창규, 정종섭, 최병덕 의원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조례와 같은 맥락으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삽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은 현재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는지?

< 답 변 >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은 인천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으며, 도화동 일대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용근, 이명숙, 박창규, 정종섭, 최병덕 위원

6. 수정안 요지

- 안 제2조 제1호 중 “체화”를 “체화(體化)”로 수정
- 안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3조를 제22조로, 제24조를 제23조로 수정
- 안 제22조(중전의 제2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제1항 중 “관리·운영 권한을”을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5명)

8. 기타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체화”를 “체화(體化)”로 한다.

안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3조를 제22조로, 제24조를 제23조로 하며,
제22조(중전의 안 제2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사무의 위
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운영 권한을”을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문화콘텐츠산업”이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u>체화</u>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1. ----- ----- <u>체화(體化)</u> ----- ----- ----- -----</p>
<p><u>제22조(문화콘텐츠육성기금의 설치) 시장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삭 제〉</p>
<p>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관리·운영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22조(사무의 위탁) ① ----- ----- ----- <u>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u> ----- -----</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3조(제정안 제24조와 같음)</p>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구청장과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제5조(제작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의 지원 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 유치)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인천광역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4조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술개발)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거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와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 추진하는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4.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소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
2.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산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